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300회 제2차 정례회

-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설 명 서



2023. 11.

고 명 욱 의원

제 안 설 명 서

제안자: 고명욱 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 제1조에서는 공중화장실의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목적을 추가적으로 규정하였고,
- 안 제4조의2에서는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 안 제7조에서는 공중화장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매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조치 사항으로는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2023년 11월 3일부터 2023년 11월 13일까지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등에 입법 예고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달서구민이 공중화장실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명욱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00923142
----------	----------

발의일자: 2023. 11. 3.
발의자: 고명욱, 도하석, 장호섭, 이선주,
김장관, 임미연, 서보영

1. 제안이유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공중화장실의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조)
- 나.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의2)
- 다. 기타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

3. 일부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가.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1
- 나. 관계법령: 붙임 2
- 나. 비용추계서: 비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복지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함”으로 한다.

제4조 중 “편의를”을 “편의와 안전을”로, “최적”을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를 통하여 최적”으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관리자로 한다.

1.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관리하는 공중화장실

2. 구청장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한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방화장실(제1호 적용 대상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화장실 개방시간 동안 관리인이 상주하는 공중화장실은 설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등에는 관련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에 비상벨을 설치하려는 자는 주소지를 관

할하는 경찰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와 연결하는 비상벨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제1항 중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구청장은 공중화장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매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 중 “제8조제1항”을 “제8조”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감안한”을 “고려한”으로,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를 “화장실 설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를 “설치”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를 “등 설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를 “안내표지판 설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를 “위한 관리인 지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를 “청결한 상태 유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위하여”를 “위하여 화장실”로, “소독하여야 한다”를 “소독”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편의용품을 비치 · 제공하여야 한다.”를 “편의용품 비치 · 제공”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衛생상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p> <p>-----</p> <p>-----</p> <p>-----</p> <p>-----</p> <p>----- <u>복지증진</u></p> <p><u>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함</u>-----.</p>
<p>제4조(설치 · 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등을 설치 · 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 · 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u><신 설></u></p>	<p>제4조(설치 · 관리자의 책무) ---</p> <p>-----</p> <p>-----</p> <p>-----</p> <p>----- <u>편의와 안전을</u></p> <p>----- <u>안전관리</u></p> <p><u>시설의 설치를 통하여 최적</u>---</p> <p>-----.</p> <p>제4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p> <p>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관리자로 한다.</p> <p>1.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p>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관리하는 공중화장실

2. 구청장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한 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방화장실(제1호 적용 대상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화장실 개방시간 동안 관리인이 상주하는 공중화장실은 설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등에는 관련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에 비상벨을 설치하려는 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와 연결하는 비상벨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경우에도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16조(이동화장실의 설치 · 관리 기준) ① 제15조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악취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 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 ·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이동화장실의 설치 · 관리 기준) ① -----

-----.

1. -----
----- 고려한 -----
----- 화장실 설치

2. -----
-- 설치

3. -----
-- 등 설치

4. -----

----- 안내표지
판 설치

② -----
-----.

1. -----
---- 위한 관리인 지정

2. -----
----- 청결한 상태 유지

3. -----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4. 제13조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③ (생 략)

----- 위하여 화장실 -

----- 소독

4. ----- 편의용품
비치·제공

③ (현행과 같음)

불임 2

관계법령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비상벨(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조례로 정한다.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공중화장실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중화장실의 위생적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